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766호
----------	--------

제출년월일 2026. 7. 8.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여 정비가 필요한 조문(제명, 조항,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 제17조)
-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정비함(안 제7조)
 - (현행)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개정)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8조)
- 라. 「상업등기법」 관련 법령 불부합 용어를 정비함(안 제19조 ~ 제22조)
 - (현행) 법인등기부등본 → (개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법령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생략(「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2) 부서협의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법제처

나) 경 기 도 : 법무담당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개정)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로, “기획재정부장관의”를 “기획예산처장관의”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2조(「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개정)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8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김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의 개정) 김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의 개정) 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김포시 물순환 기본 조례」의 개정) 김포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개정)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김포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김포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김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조(「김포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포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의 개정)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2조(「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환경부지침”을 “기후에너지환경부지침”으로 한다.

제14조(「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포시 종량제 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5조(「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의 개정)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6조(「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의 개정)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7조(「김포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의 개정) 김포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8조(「김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12조제3항”을 “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김포시 경제활성화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포시 경제활성화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0조(「김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의 첨부란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1조(「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의 첨부란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2조(「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인 등기부등본에”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예산법무과
입 안 자	담당관·과장·소장 직위·성명	예산법무과장 최 신
	팀장 직위·성명	법무지원팀장 김 유 재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정 선 아(☎2332)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u>기획재정부장관의</u>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u>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u>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 - <u>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u> ----- ----- - <u>기획예산처장관의</u> ----- ----- --- <u>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u> ----- ----- -----.
8. (생략)	8. (현행과 같음)

제2조(「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영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 ----- -----

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u>기획재정부 장관</u>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 사. (생략) 2. 3. (생략) ② (생략)	----- ----- --. 1. ----- ----- -----. 가. ----- ----- ----- <u>재정경제부 장관</u>----- ----- ----- ----- 나. ~ 사. (현행과 같음)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제3조(「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3조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처리구역) ① (생략)	제3조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처리구역)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u>환경부장관</u> 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②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제9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제9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제10조에 따른다. 1. ~ 7. (생략) 8. 시행규칙 별표 10 비고에 따라 <u>환경부장관</u>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오염물질 제10조(배출허용기준) ① (생략) ② 제9조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u>환경부장관</u>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수질오염물질)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제10조(배출허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	--

제4조(「김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u>환경부장관</u>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

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해당기관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교육훈련) ① (생략)	제10조(교육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u>환경부장관</u>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 -----.

제5조(「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② (생략)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환경부장관</u> 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보호구역 출입신고서에 출입예정 장소를 표시한 임야도(축척 6천분의 1의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 ----- -----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6조(「김포시 물순환 기본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u>환경부령</u>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 10. (생략)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u>기후에너지환경부령</u> -----. 4. ~ 10. (현행과 같음)

제7조(「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② (생략) 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u>환경부장관</u> 및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
제9조(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9조(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

보고서를 작성하여 김포시 <u>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u>환경부장관</u>과 경기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u>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u> 제10조(<u>김포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u>)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김포시 <u>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8. (생략) 제27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환경부장관</u> 및 경기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④·⑤ (생략)	----- <u>기후위기 대응위원회</u>-----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제3장 <u>기후위기대응위원회</u> 제10조(<u>김포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u>) ----- ----- <u>기후위기대응위원회</u>----- -----. 1. ~ 8. (현행과 같음) 제27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 ④·⑤ (현행과 같음)
--	--

제8조(「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생략) ⑥ “공급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⑥ ----- -----.

1.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u>산업 통상자원부 장관</u>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 주택 등”이라 한다)에 가스를 공 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 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 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 치하는 계량기의 전단 밸브(계량 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 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 르는 배관 2. (생략) ⑦ (생략)	1. ----- ----- <u>산업 통상부장관</u> ----- ----- ----- ----- ----- ----- ----- ----- ----- 2.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	--

제9조(「김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
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저공해 조치 대상은 법 제58조에 따라 <u>환경부령</u> 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 차 및 건설기계(이하 “자동차 등”이 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 ----- <u>기후에너지 지환경부령</u> ----- ----- -----.

제10조(「김포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u>환경부장관</u> 이 정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② (생략)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u>환경부령</u> 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2. 3. (생략)	제2조(정의) ----- -----. 1. ----- ----- ----- ----- <u>기후에너지환경부령</u> ----- -----. 2. 3. (현행과 같음)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환경피해 인정자 중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환경보건법」 제15조2항에 따른 <u>환경부</u> 역학조사 기간 및 대상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제4조(적용 대상) ----- ----- -----. 1. ----- <u>기후에너지환경부</u>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2조(「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7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생 략)	제17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u>환경부장관</u> 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 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 ----- ----- -----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u>환경부장관</u>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3조(「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4조(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제14조(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 ----- -----

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계법령과 <u>환경부지침</u>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 ----- <u>기후에너지환경부지침</u>----- ----- ----- ----- ----- -----.
---	---

제14조(「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3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가격 등) ① (생략) ②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u>환경부</u>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상은 흰색(반투명), 음식물용 봉투는 옅은 녹색, 가정특수용 봉투는 옅은 황색, 가정특수용 마대는 흰색(불투명), 공공용 봉투의 색상은 옅은 청색으로 한다. ③·④ (생략)	제3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가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기후에너지환경부</u>-----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①·② (생략)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환경부</u> 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3. <u>기후에너지환경부</u> ----- -----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6조(「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② “통합상표”란 제1항에 따라 인증한 농특산물을 「상표법」에 따라 <u>특허청</u> 에 출원·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 ----- <u>지식재산청</u>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김포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6조 (수질검사) ①시장은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제2항와 <u>환경</u>	제6조 (수질검사) ①----- ----- <u>기후</u>

<u>부령</u>(「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제1항,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u>에너지환경부령</u>----- ----- ----- ----- ----- -----. ② (현행과 같음)
--	--

제18조(「김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자원순환기본법</u>」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률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의거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내의 자원재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 ----- 「<u>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u>」----- ----- ----- ----- ----- -----. 제3조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 ---- 법 제11조제3항----- ----- ----- ----- ----- -----.

제19조(「김포시 경제활성화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지역산업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업종으로 법인인 경우 <u>법인등기부등본</u> ,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산업체를 말한다. 3. ~ 10.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u>법인등기사항증명서</u> ----- ----- ----- -----. 3. ~ 10. (현행과 같음)

제20조(「김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별지 서식]						[별지 서식]																													
위·수탁 운영(갱신) 신청서						위·수탁 운영(갱신) 신청서																													
법인 현 황	법인명				대표자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소재지																				
	설립일자					연락처					설립일자					연락처																			
	재산내역	고정자산			유동자산					재산내역	고정자산			유동자산																					
주요사업 등 법인홍보내용																		주요사업 등 법인홍보내용																	

위와 같이 김포시 복지관(노인,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을 위·수탁 운영(갱신)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u>법인등기부등본</u>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2. 법인정관 및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3. 법인임원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각 1부 4. 법인 최근 3년간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시설법인제외) 1부 5. 사업계획서(운영계획, 종사자 확보계획) 1부 6. 기타 자료에 대한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 직인 김 포 시 장 귀하	위와 같이 김포시 복지관(노인,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을 위·수탁 운영(갱신)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u>법인등기사항증명서</u>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2. 법인정관 및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3. 법인임원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각 1부 4. 법인 최근 3년간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시설법인제외) 1부 5. 사업계획서(운영계획, 종사자 확보계획) 1부 6. 기타 자료에 대한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 직인 김 포 시 장 귀하
---	---

제21조(「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별지]				[별지]			
위(수)탁 운영 신청서				위·수탁 운영(갱신) 신청서			
법 인 현 황	법 인 명 소 재 지	대 표 자		법 인 현 황	법 인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설립일자	연 락 처			설립일자	연 락 처	
	재산내역	고정자산	유동자산		재산내역	고정자산	유동자산
주요사업 등 법인홍보내용				주요사업 등 법인홍보내용			
위와 같이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u>법인등기부등본</u>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2. 법인정관 및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3. 법인임원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각 1부 4. 법인 최근 3년간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 (신설법인제외)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기타 자료에 대한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 직인 김 포 시 장 귀하				위와 같이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u>법인등기사항증명서</u>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2. 법인정관 및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3. 법인임원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각 1부 4. 법인 최근 3년간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 (신설법인제외)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기타 자료에 대한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 직인 김 포 시 장 귀하			

제22조(「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u>법인 등기부등본</u> 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본사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u>법인등기사항증명서</u> 에----- ----- ----- ----- -----. 3. (현행과 같음)

정부조직법

제23조(기획예산처) 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둔다.

② 기획예산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7조(국가데이터처) ①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통계·데이터의 총괄·조정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처를 둔다.

② 국가데이터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8조(지식재산처) ①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식재산처를 둔다.

② 지식재산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9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국가보훈부
10.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축산식품부
12. 산업통상부
13. 보건복지부
14. 기후에너지환경부
15. 고용노동부
16. 성평등가족부

17. 국토교통부
18. 해양수산부
19.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재정경제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재정경제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④ 국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⑥ 관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⑦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⑧ 조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⑨ 삭제 <2025. 10. 1.>

⑩ 삭제 <2025. 10. 1.>

제41조(산업통상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산업통상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④ 삭제 <2025. 10. 1.>

⑤ 삭제 <2025. 10. 1.>

제43조(기후에너지환경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②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 ③ 기상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5조(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4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변경승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업등기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 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등기기록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